

## 제 15 장 투명성

### 제 15.1 조 공표

1.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, 규정,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전자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,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2. 가능한 범위에서,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
  - 가. 자국이 채택 또는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. 그리고
  - 나.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.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거나,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.

### 제 15.2 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

1. 가능한 범위에서,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.

2. 한쪽 당사국은,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그리고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를 이전에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, 그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.
3. 제 1 항에 언급된 정보는 그 정보가 WTO 로의 적절한 통보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때, 또는 당사국의 공식적이고 공개된, 무료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 당사국이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.
4.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.
5. 이 조에 따른 모든 통보,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연락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된다.

### 제 15.3 조 행정절차

각 당사국은 모든 자국의 법, 규정,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.

### 제 15.4 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,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, 사법,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는 공평하고,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,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

도 가지지 않는다.<sup>1</sup>
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.

- 가.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, 그리고
- 나.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, 또는 자국의 법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
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,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고,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.

### 제 15.5 조 정의

이) 장의 목적상,

**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**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,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.

- 가.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, 또는
- 나.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

---

<sup>1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1994년도 GATT 제10조제3항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